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가합539975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선정당사자)A

피고1. B

2. 주식회사 한서비엠티

3. C

4. D

변론 종결 2015. 9. 3. [피고(선정당사자) A, 피고 B에 대하여]

2015. 11. 12. (피고 주식회사 한서비엠티, C, D에 대하여)

판결 선고 2015. 11. 2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E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281,408,996원 및 그 중

220,398,620원에 대하여는 2015. 5. 15.부터, 60,101,827원에 대하여는 2015. 5. 28.부터 각

2015. 7. 7.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은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E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84,599,318원 및 그 중 124,497,242원에 대하여는 2015. 5. 15.부터, 60,101,827원에

대하여는 2015. 5. 28.부터 각 2015. 7. 7.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한서비엠티와 선정자 E 주식회사 사이에 2014. 7. 2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한서비엠티는 선정자 E 주식회사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7. 30. 접수
제4789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와 선정자 E 주식회사 사이에 2014. 8. 1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선정자 E 주식회사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8. 11. 접수 제5061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D와 피고 B 사이에 2014. 11. 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피고 B에게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5. 1. 8. 접수 제60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선정당사자 포함)이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를 편의상 모두 '피고'라고만 하고, '주식회사'인 피고는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하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순서에 따라 '제1 ~ 제5 부동산'이라
한다.

이 유

1. 전제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

○ 피고 E는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 '대출약정'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자금을 각 대출받았고, 원고와 사이에 각 대출약정을 위하여 아래 표 '신용보증약정'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순번에 따라 '1차 ~ 3차 보증약정'이라 한다).

1	2009. 8. 14.	중소기업은행	기업구매 자금대출	1억 8,000만	2009. 8. 12.	1억 4,400만	2009. 8. 12.부터 2010. 8. 11.까지
2	2011. 8. 12.	국민은행	기업일반 자금대출	1억 6,900만	2011. 8. 4.	1억 3,520만	2011. 8. 4.부터 2012. 8. 3.까지
3	2012. 9. 7.	국민은행	통장자동 대출	1억 1,700만	2012. 9. 7.	9,360만	2012. 9. 7.부터 2013. 9. 6.까지

○ 위 각 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E는 원고가 피고 E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위약금, 권리보전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 그 후 각 보증약정의 보증조건은 수차례 변경되었는바, 최종적인 1차 보증약정의 보증조건은 보증원금 5,950만 원, 보증기간 2015. 8. 7.까지였고, 2차 보증약정의 보증조건은 보증원금 121,680,000원, 보증기간 2015. 7. 31.까지였으며, 3차 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은 2014. 12. 4.까지였다.

○ 위 각 보증약정 체결 당일에 피고 A은 피고 E의 위 각 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B은 피고 E의 1차, 2차 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대위변제

○ 피고 E가 위 각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위 각

은행은 원고에게 각 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각 은행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E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그 후 피고 E로부터 378,707원을 회수하였다.

1	중소기업은행	1차 보증약정	2014. 5. 28.	59,213,000	1,267,534	378,707	60,101,827
2	국민은행	2차 보증약정	2014. 5. 15.	121,680,000	2,817,242	0	124,497,242
3	국민은행	3차 보증약정	2014. 5. 15.	93,600,000	2,301,378	0	95,901,378
합계	280,500,447						

○ 또한 원고에게, 1차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사고와 관련하여 249원의 확정손해금 채권이 발생하였고, 3차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사고와 관련하여 908,300원의 위약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다.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등

○ 피고 E는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30. 피고 한서비엠티에게 '2014. 7. 29.자 설정계약'(이하 '제1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500만 원, 채무자 피고 E, 근저당권자 피고 한서비엠티인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고, 2014. 8. 11. 피고 C에게 '2014. 8. 11.자 설정계약'(이하 '제2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피고 E, 근저당권자 피고 C인 주문 제3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피고 B은 2015. 1. 8. 피고 D에게 제2 내지 제5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6.자 설정계약'(이하 '제3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200만 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D인 주문 제4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3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각 설정계약 체결 무렵 피고 E, B의 각 재산상태는 아래 각 표의 기재 내역과 같다.

적극재산 1	제1 부동산	540,000,000	갑 제16호증
합계	540,000,000		
소극재산	1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	359,100,000
2	피고 한서비엠티에 대한 채무	17,918,200	을다 제1호증
3	주식회사 플러스미디어에 대한 채무	19,820,000	을다 제1호증
4	주식회사 산애택에 대한 채무	12,690,000	을다 제1호증
5	피고 C에 대한 채무	40,000,000	을라 제2호증

적극재산 1	제1 부동산	540,000,000	갑 제16호증
6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281,408,996	갑 제1 내지 7호증
합계	730,937,196		

적극재산	1	제2 부동산	12,730,800	갑 제9호증의 2, 제11호증의 1
2	제3 부동산	3,233,200	갑 제9호증의 3, 제11호증의 2	
3	제4 부동산	2,435,670	갑 제9호증의 4, 제11호증의 3	
4	제5 부동산	8,970,700	갑 제9호증의 5, 제11호증의 4	
5	나주시 F 전 66㎡	785,400	갑 제12호증의 1, 제13호증의 1	
6	나주시 G 구거 136㎡	1,482,400	갑 제12호증의 2, 제13호증의 1, 2	
합계	29,638,170			
소극재산	1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281,408,996	갑 제1 내지 7호증
합계	281,408,996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다 제1호증, 을라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 피고 A, B에 대한 각 청구

전제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 E, 피고 A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281,408,996원(= 대위변제금 280,500,447원 + 확정손해금 249원 + 위약금 908,300원) 및 그 중 2차, 3차 보증약정 관련 대위변제금 220,398,620원(= 124,497,242원 + 95,901,37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5. 15.부터, 1차 보증약정 관련 대위변제금 60,101,82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5. 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7. 7.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B은 피고 E,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①의 돈 중 184,599,318원(= 대위변제금 184,599,069원 + 확정손해금 249원) 및 그 중 2차 보증약정 관련 대위변제금 124,497,24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5. 15.부터, 1차 보증약정 관련 대위변제금 60,101,82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5. 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7. 7.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한서비엠티, C, D에 대한 각 청구

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

전제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E, B에 대하여 위 2.항과 같이 인정되는 구상금 채권 및 연대보증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위 각 채권은 각 설정계약 체결 후인 2015. 5. 15.(원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위변제일) 내지 2015. 5. 28.(원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위변제일)에 성립하였으나, 각 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미 위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각 보증약정의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피고 E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위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15. 5. 15. 내지 2015. 5. 28.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구상금 채권 및 연대보증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구상금 채권 및 연대보증 채권은 각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전제사실에 의하면, 피고 E는 제1, 2 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면서도 제1, 2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유일한 부동산인 제1 부동산을 피고 한서비엠티 및 피고 C에게 각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 B은 제3 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면서도 제3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제2 내지 제5 부동산을 피고 D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제1, 2 설정계약의 체결은 피고 E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제3 설정계약의 체결은 피고 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E와 피고 B은 당시 이로써 각자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 한서비엠티 및 피고 C의 악의는 각 추정된다.

다. 선의 수익자 항변

1) 피고 한서비엠티 피고 한서비엠티는, 자신은 피고 E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자로서 피고 E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았고, 주식회사 플러스미디어와 주식회사 산애택은 피고 E에 대한 채권자들로서 개별적으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었으나, 피고 한서비엠티, 주식회사 플러스미디어, 주식회사 산애택은 피고 E와 합의하여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는 대신 피고 E가 피고 D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피고 한서비엠티, 주식회사 플러스미디어, 주식회사 산애택에게 지급하고, 위 각 채권의 담보로 추가로 제1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일 뿐이며, 피고 한서비엠티는 제1 설정계약이 피고 E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다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한서비엠티, 주식회사 플러스미디어 및 주식회사 산애택이 피고 E에 각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한서비엠티가 제1 설정계약이 피고 E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한서비엠티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 C 피고 C은, 피고 E의 채권자들인 피고 한서비엠티 등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피고 E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하여 피고 E가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영업수행에 곤란을 겪게 된 상황에서 자신이 피고 E에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제2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제2 설정계약이 피고 E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라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2014. 7. 29. 피고 E에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C이 제2 설정계약이 피고 E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 D 피고 D은, 자신은 피고 A에게 합계 4,8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와 사이에 제3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제3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일 뿐, 제3 설정계약이 피고 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마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이 피고 A에게 2014. 8. 29. 800만 원, 2014. 11. 6. 4,0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D이 제3

설정계약이 피고 E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제1 내지 제3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제1 내지 제3 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E에게, 피고 한서비엠티는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C은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은 피고 B에게 제3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현룡

판사장유식

판사황정언

별지

1) 적극재산 순번 1 내지 5항은 면적당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산출하였고, 순번 6항은 인접지인 순번 4항의 면적당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산출하였다.